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2

발의연월일: 2024. 7. 3.

발 의 자: 박수민·김선교・박성민

이헌승 · 김상훈 · 서지영

강승규 · 박준태 · 이종욱

윤한홍 · 임종득 · 신성범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결정할 때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현행 과세 체계하에서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어 해당 유형의 사업자들이 사업장의 확보를 위하여 주소지만을 유료로 임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주소 등을 납세지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거지가 자기소유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소일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

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 제6항"을 "제6조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납세지) ① ~ ③ (생 략)	제6조(납세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A) (A) (A) (A)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u>④</u> ~ <u>⑥</u> (생 략)	<u>⑤</u> ~ <u>⑦</u> (현행 제4항부터 제6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	항까지와 같음) 제7조(과세 관할) ①
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	세(소(삭제 원활) ①
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6항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u> </u>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2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	제6조제7항
 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이 과세한다.	